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92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김소희 · 서범수 · 김미애
성일종 · 김상훈 · 이현승
김예지 · 박덕흠 · 우재준
박충권 · 백종현 · 주호영
안상훈 · 고동진 · 엄태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법률 제 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경계 또는”을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계 및 학교경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를 “어린이집출입문 및 학교출입문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u>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u> 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u>경계 및 학교경계 또는-----</u> ----- ----- ----- ----- -----.
1. 절대보호구역: <u>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u>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1. ----- <u>어린이집출입문 및 학교출입문으로부터--</u>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